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2.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4946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4946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u>제2조(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6월 9일</u> <u>2. 법 제3조제8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10월 10일</u>	대통령령 제34946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u>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